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565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0.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214,4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14,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박성인

별지

목록

1. 전라남도 무안군 [] 대 247㎡

2. 전라남도 무안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단독주택 76.91㎡

가.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D 주식회사는 2016. 11. 29. 위 C 에게 금 1,5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은 연 19.90%, 연체이자율은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참조).

그런데 위 C 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 은행은 2019. 3. 8.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 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였고(서울동부 2019가소436647), 2020. 4. 22.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위 C 은 위 양수금과 관련하여 금 28,305,965원 및

그 중 금 13,958,180원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어머니는 소외 E이었는데, 위 E은 2021. 9. 27.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E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E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10. 13. 피고의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동기사항전 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위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2017. 9. 21. '채권최고액 금 520만 원', '근저당권자 F 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1. 10. 1.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6. 말소되었는 바(갑 제5호증의 1, 2 각 참조),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전술하였던 2021. 12. 22.까지의 원리금 채권액인 금 28,305,965원을 한도로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을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모순되지 않는 한 원용합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C에게 가지는 채권액은 2021. 12. 22. 기준 28,305,965원입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E은 2021. 9. 2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B' (피고, 수익자), 'C' (채무자), 'G', 'H', 'I' 5명이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C은 형제 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1/5' 입니다.

나. 위 E은 2021. 9. 27.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21. 10. 12.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1. 10.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 C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4. 채무자인 소외 C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2. 17.자 회신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C은 2020. 9.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10. 12.)를 거쳐 조희일 현재까지의 사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소외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나. 아울러, 원고가 증거로 신청한 J단체의 회신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C의 무자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채무자인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28,305,965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인 소외 C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10. 12.)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었던 것입니다.

다. 대법원은 ‘채무초과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권리 포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기한 2021. 10.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책임재산의 범위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혔듯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2017. 9. 21. 접수 제20255호로 ‘채권최고액 52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5-1, 2의 각 을구 3번 참조)

가 마쳐졌었으나,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인

2021. 10. 6. 말소되었으며(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F조합의 2022. 1. 26.자 회신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속개시(2021. 9. 27.) 후인 2021. 9. 30.자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회신 2, 3쪽 상환일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채무 소멸 후(2021. 10. 12.)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사해행위 후 책임재산이 변동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공평의 관점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21년 당시 공시가격이 총 25,177,800원(=K 토지

14,177,800원(= 57,400원 × 247㎡) + K 지상 건물 11,000,000원)이므로(갑 제9, 10호 증 각 공시가격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재 총 시가는 25,177,800원 이상으로 추인됩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산정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별지 목록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시가	참조
1	전라남도 무안군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5,177,800원	갑 제9, 10호증 각 공시가격
순번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내용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액 공제	참조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2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 2017. 9. 21. 집수 제20255호	-4,105,774원	F조합의 2022. 1. 26.자 회신 2쪽
합계		21,072,026원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 21,072,026원 중 채무자인 소외 C의 상속지분 상당액 4,214,405원(= 21,072,026원 × 1/5, 1원 미만 버림)이 채무자인 소외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원고는 위 책임재산 부분과 원고가 밝힌 피보전채권액(2021. 12. 22. 기준 28,305,965원) 중 더 적은 금액인 4,214,405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